

대 구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8965 부동산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3. 30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손종욱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목록 1: 2022.05.12. 근저당 목록 2: 2013.11.05. 건물 중 일부(2층) 전세권 2022.05.12.근저당			배당요구종기	2025. 10. 29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강해식	건물 2층 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전세권 자	2013.11.05. 부터 2015.11.04. 까지	40,000,000					
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13.11.07.			
	2층 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13.11.05. 부터 현재까지	40,000,000	100,000	2013.11.07.		2025.9.15.	
	2층 전부	권리신고	주거 전세권 자		40,000,000		2013.11.07.		2025.9.15.	
<비고> 강해식:전세권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3.11.05.임. 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일괄매각,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8965

[물건 1]

1.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3가 28-3
대 128.6㎡
2.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3가 28-3
[도로명주소]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 127-7
위 지상
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
및 소매점
1층 74.44㎡
내소매점 35.68㎡
2층 주택 65.41㎡

제시외 2-1 욕실, 보일러실 판넬조 6.5㎡
2-2 다용도실 판넬조 2.8㎡

감정평가액		973,780,6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25	973,780,600	97,378,100
2회	2026.04.22	681,646,000	68,164,600
3회	2026.05.13	477,152,000	47,715,200
4회	2026.06.10	334,006,000	33,400,600
일괄매각,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			